##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465 발의연월일: 2024. 8. 1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서영교 · 이정헌

김주영 • 박민규 • 이기헌

이상식 · 송옥주 · 이병진

임미애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농지전용 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도록 하되, 토지의 개량시설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농지에 축사 곤충사육시설 및 부속시설 등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목적행위가 가능하지만, 양어장·양식장 등 내수면 양식업 (수산물 생산시설)의 경우에는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제한적인 사용기간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농지에 설치하는 수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 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추가 절차를 거치지 않도 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7호 등).

법률 제 호

###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7호 단서 중 "제1호나목에서 정한"을 "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양어장·양식장 등 수산물 생산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
나.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
제35조제1항제1호 중 "농축산업용"을 "농수축산업용"으로, "제2조제1호나목에"를 "제2조제7호 단서에"로, "농축산물"을 "농수축산물"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시설과 양어장·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"을 "시설"로 한다.

제36조제1항제1호 중 "제2조제1호나목에"를 "제2조제7호 단서에"로, "농축산물"을 "농수축산물"로 한다.

제49조의2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에 수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6의2. (생 략)	1. ~ 6의2. (현행과 같음)
7. "농지의 전용"이란 농지를	7
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	
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	
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	
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<u>제1호</u>	<u>다음</u>
<u>나목에서 정한</u> 용도로 사용하	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는 경우에는 전용(轉用)으로	<u>는</u>
보지 아니한다.	
<u>&lt;신 설&gt;</u>	<u>가. 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</u>
	<u>하는 양어장·양식장 등</u>
	수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
	령령으로 정한 용도로 사
	용하는 경우
<u>&lt;신 설&gt;</u>	나.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
	로 사용하는 경우
8. (생 략)	8. (현행과 같음)
제35조(농지전용신고) ① 농지를	제35조(농지전용신고) 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	

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.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- 1. 농업인 주택, 어업인 주택, <u>농축산업용</u> 시설(제2조제1호 <u>나목에</u> 따른 개량시설과 <u>농축</u> <u>산물</u> 생산시설은 제외한다), 농수산물 유통·가공 시설
- 2. (생략)
- 3. 농수산 관련 연구 <u>시설과 양</u> <u>어장·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</u> ②·③ (생 략)

제36조(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저하가 등) ① 농지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같다. 다만, 국가나 지방자치단

,
1
농수축산업용제2조제7
호 단서에
<u> 농수축산물</u>
2. (현행과 같음)
3 <u>시설</u>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세36조(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
허가 등) ①

체의 경우에는 시장·군수 또 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- 1.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(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<u>농축산물</u> 생산시설은 제외한다)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
- 2. ~ 5. (생 략) ② ~ ⑤ (생 략)
- 제49조의2(농지이용 정보 등 변 경신청)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 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·구·읍·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.
  - 1. (생략)

<신 설>

<u>2.</u>·<u>3.</u> (생 략)

1
제2조제7호 단서에
농수축산물
2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49조의2(농지이용 정보 등 변
경신청)
1. (현행과 같음)
2.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
에 수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
는 경우
3 <u>· 4.</u>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
로 (